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 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 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 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u>2026년 6월 30일까지</u> 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3의2. ----- -----. --- <u>2026년 7월 31일</u> -----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 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 의 물품은 제외한다): <u>2025</u> <u>년 12월 31일까지</u> 킬로그 램당 10.2원	라. ----- ----- <u>2026</u> <u>년 12월 31일</u> ----- -----
5. 삭 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